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등 관리 업무는 현재 지방이양사무인데,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전산시스템 부재로 인해 업체 관리가 미흡하여 부실업체 등 업체 난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. 이에, 업체 관리업무의 일관성·통일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또한, 법에서는 법인은 자본금, 법인이 아닌 경우는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시행령에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아 업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. 이에,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구분 및 명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보증보험 가입 면제 기준 명확화(안 제30조의2)

- 1)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‘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’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업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.
- 2) 법인은 자본금,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

나. 등록업무 위탁근거 마련(안 제51조제3항)

- 1) 지자체가 수행하는 업체 관리업무의 일관성·통일성 제고를 위해, 지자체 등록업무를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기관(협회 등)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2) 물류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·변경등록 등의 접수, 확인 및 심사 업무를 추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물류정책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제1호 중 “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”을 “자본금(법인) 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(법인이 아닌 경우)”으로 한다.

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 또는 법인”을 “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 또는 법인(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를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·변경등록을 위한 신청의 접수, 확인 및 심사
8.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 접수, 확인 및 심사
9. 법 제45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승계 신고의 접수, 확인 및 심사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의2(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) 법 제43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.	제30조의2(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</u>	1. <u>자본금(법인) 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(법인이 아닌 경우)-</u> ---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51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·② (생략)	제51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<u>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 또는 법인</u> 에 위탁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 또는 법인(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를 포함한다)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삭제	
<u><신 설></u>	7.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·변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④ · ⑤ (생 략)	<u>경등록을 위한 신청의 접수, 확인 및 심사</u> 8. <u>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 접수, 확인 및 심사</u> 9. <u>법 제45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승계 신고의 접수, 확인 및 심사</u>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998